

#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길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14.  
대표발의자 : 최길영 의원  
공동발의자 : 김영철 의원  
박기홍 의원  
한성환 의원  
김상용 의원  
정우식 의원  
김시욱 의원  
이상걸 의원  
이상우 의원  
노미경 의원

## 1. 개정이유

- 의안의 의회제출 기한을 본회의 개의 10일 전으로 통일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의안의 의회제출 기한 변경(안 제6조제2항)  
(기존)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 전, 예산안 등 의안은 본회의 개의 10일 전  
(변경) 의안은 본회의 개의 10일 전

## 3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【붙임1】 지방자치법 53조
- 나. 의안의 비용추계 : 【붙임2】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- 다. 참고사항 : 【붙임3】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

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조례 제 호

##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예산안 등의 의안은 개의 10일 전” 을 “본회의 개의 10일 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6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	제6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제출·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예산안 등의 의안은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본회의 개의 10일 전----- ----- -----. -----.

**붙임1**

**관계법규**

「지방자치법」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붙임2**

**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**

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
미첨부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2. 미첨부 사유

-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작성자

-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 (☎204-4129)

**붙임3**

**참고사항**

**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**

- ( 제정) 2006.09.21 조례 제 413호
- (일부개정) 2007.11.29 조례 제 471호
- (일부개정) 2007.12.27 조례 제 486호
- (일부개정) 2008.09.25 조례 제 527호
- (일부개정) 2011.10.28 조례 제 673호
- (일부개정) 2015.11.05 조례 제888호
- (일부개정) 2022.12.15 조례 제143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1.29, 2011.10.28, 2021.12.29., 2022.9.8.>

제2조(회의 총 일수)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1.29, 2007.12.27, 2008.9.25, 2011.10.28., 2022.12.15.>

제3조(회기) 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7.12.27, 2011.10.28., 2022.9.8.>  
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 <신설 2022.9.8., 개정 2022.12.15.>

제4조(정례회 집회일)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 <개정 2007.11.29, 2011.10.28, 2015.11.5., 2022.9.8.>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15.>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15.>
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0조에 따라 결산승인,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의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7.11.29, 2011.10.28., 2021.12.29., 2022.9.8.>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7.11.29, 2011.10.28., 2021.12.29., 2022.9.8.>

제6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

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·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예산안 등의 의안은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조문신설 2022.12.15.>

제7조(회의운영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 <2006.9.21 조례 제413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07.11.29 조례 제47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12.27 조례 제486호>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9.25 조례 제5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10.28 조례 제6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11.5 조례 제8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370호, 2021.12.29.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9.8., 조례 제140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12.15., 조례 제143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